

【 7 】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7.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 FTA 타결 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의 수입 개방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가의 영농 경쟁력 강화와
- 단기간 사용하는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 해소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소득증대와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법적 근거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가의 영농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나. 농기계 대여은행의 정의, 기능,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 정비 교육, 수리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과 관리책임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며,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공제)을 가입 후 대여한다.

다. 농기계 수리의 효율성 제고와 수리부품대 감면 규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하며, 농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정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농기계 1대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한다.

라. 농기계 대여기준, 기간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농기계 대여기준은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종별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농기계 출고시에서 입고 완료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 농기계 사용 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시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여를 불허한다.

마.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 농기계 사용료는 구입단가를 기준으로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하고 사용료의 납부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며 농기계 사용허가 기간내에 장비를 입고 하지 않은 경우 초과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1.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바. 사용료 감면, 반환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취소등

농기계 사용 취소시는 농기계 사용료 반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한다.

**사. 농기계 사용 허가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책임과 변상에 관하여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 사용허가 목적외에 사용 한 경우등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관리의무 태만으로 인한 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 시에는 변상한다.
-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다만, 천재지변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와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이하 "농기계 대여은행"이라 한다)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대여은행"이라 함은 양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 정비 교육, 수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대여 농기계"라 함은 양주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대여 받기 위하여 양주시 금고에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농기계 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등으로 확보 운영한다.

②농기계 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양주시장의 명을 받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농기계 대여은행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관리 한다.

④농기계 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⑤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여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공제)을 가입하여 농기계를 대여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기계 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은 담당 1명, 담당자 1명, 농기계교관 1명, 수리요원과 수리보조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겸한다.

제7조(농기계 수리) ①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②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농기계 수리시에는 현장 농

업인 농기계 정비 및 관리요령등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③농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정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농기계 1대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한다.

⑤당일 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준 및 기간) ①대여기준은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종별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하여 1대로 본다.

②대여 신청농가 입회 하에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 및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출고한다.

③대여기간은 농기계 출고시에서 입고 완료시까지 일단위로 계산 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로 한다.

④농기계 사용 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⑤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대여를 불허한다.

제10조(사용료) ①농기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단가가 300만원 미만은 5,000원
2. 구입단가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10,000원
3. 구입단가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5,000원
4. 구입단가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20,000원
5. 구입단가가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50,000원
6. 구입단가가 3,000만원 이상은 100,000원

②대여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입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④대여 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 기간내에 장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따라 사용료의 1.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대여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농기계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및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농기계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기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
 - ②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료 반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하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한 경우
- ②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③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다만, 천재지변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비치대장) 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①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 ②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사용신청대장 별지 제7호서식
- ③농기계 수리일지 별지 제8호서식
- ④농기계 순회 수리일지 별지 제9호서식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변상금등 일체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 방법 및 체납처분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사용 허가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기종명		(규격 :) ※ 부속작업기(부품)
사용기간		년 월 일 ~ 월 일(일간)
작업면적		ha(논 : 밭 : 기타 :)
작업내용		
사용료		원
사용료 납부기한		
사용료 납부방법		
기타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반납한다. - 기계 운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술센터 까지 운반 반납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대여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농기계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시 차후 대여를 불허함.</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p>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신 청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대 여 기 종 명		(규 격 :) ※ 부속작업기(부 품)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일간)
작 업 면 적		ha(논 : 밭 : 기타 :)
작 업 내 용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첨 부		
<p>「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p> <p>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p> <p>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 사용 허가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기종명		(규격 :) ※ 부속작업기(부품)		
사용기간		년 월 일 ~ 월 일(일간)		
작업면적		ha(논 : 밭 : 기타 :)		
작업내용				
사용료 감면사유				
<p>「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료 감면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p>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반환 청구서

담당자	담당과장	결재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E-mail	
예약된 대여 기종명		(규격 :) ※ 부속작업기(부품)
사용료 기납부액		원
반환 청구액		원
반환 청구사유		
<p>「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자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p> <p>첨부 : 신분증 사본 1부.</p>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징수관 : 성명 : (인)</p>		
<p>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p>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관리대장

작성일자 : 년 월 일

기종(제작사)		규격(모델)	기 대 번 호
구 입 일 시		구 입 가 격	내 구 연 수
주 요 관 리 내 역			
일자	주 요 문 제 점	조 치 결 과	담당자확인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 **타시군 조례 : <별첨 2>**

-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 <별첨 3>**

□ **예산수반사항 : <별첨 4>**

□ **의원간담회 제시의견 반영 결과 : 2007. 6. 19 <별첨 5>**

□ **기타참고사항 : <별첨 6>**

- 200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농림부)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농촌진흥청 농업공업연구소)
- 현행조례(전문)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기계화촉진법】 -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5호

제3조 (농업기계화촉진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농업기계화기본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수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업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제8조 (공동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2007. 5.17 법률 제8435호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별첨 2>

타 시 군 조 례

1.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2.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3.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1.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2001.12.31 조례 제0479호]

개정 2004.10.13. 조례 제05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을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은행 이라 함은 남양주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수리, 보관, 임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수리 라 함은 남양주시가 농업인에게 마을단위별로 순회하여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및 요청하는 농업기계를 수리하며, 또한 임대농업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보관 이라 함은 남양주시가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하고 임대료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농업인의 농업기계를 1년내외 유상 보관해주는 것을 말한다.
4. 임대 라 함은 남양주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업기계은행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보관하는 사항
3. 농업기계를 부품구입비만 징수하고 수리하는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농업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 운영한다.

②농업기계은행의 장비 및 보관창고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③농업기계은행의 관리책임자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④농업기계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6조(업무담당) 농업기계은행은 농업기계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소속인원중 담당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기술요원을 활용한다.

제7조(농업기계 수리) ①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수리차량을 운영한다.

②농업기계 수리는 방문하는 농업기계를 수리하며 영농현장에서 고장난 기계도 수리하며 마을단위 순회도 실시한다.

③농업기계의 수리시 부속품대금을 제외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4.10.13.>

④부속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으로 징수하되, 농업기계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이 농업기계 1대당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며, 당일 징수한 대금은 다음날까지 시공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13.>

제8조(농업기계 보관) ①농업기계은행에 농업기계를 보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표 1의 보관료 산정기준에 의거 납부한다.

②농업기계 보관료는 농업기계 입고시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기계은행에 농업기계를 입고한 농업인은 농업기계 보관증을 발부받아 출고시에 이를 반납한다.

제9조(임대기준) ①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임대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대 신청자가 농기계보유수보다 초과 될 경우에는 1농가 1대(기간 : 2일이내)을 기준으로 분배하여 임대 순위를 결정한다.

③농업기계를 임대할 때 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 완료할 때까지로 하며, 일단위로 계산한다.

④임차인은 본인이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 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사용후 기계 입고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제10조(임대계약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1조(임대료) ①농업기계은행에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표 2

의 농업기계은행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납부한다.

②임대료 납부는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내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따라 징수금액을 징수하여 납입한다.

④재해복구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료의 일부 및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13조(양도·대여금지) 농업기계은행에서 임대한 농업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를 할 수 없다.

제14조(임대기계의 반환) ①임대하여간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유무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농업기계은행에서 임대한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7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화군농기계은행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은행”이라 함은 강화군이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이다.
2. “대여농기계”라 함은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강화군농기계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강화군 금고에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은행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교육
3. 적기영농추진

제5조(운영및관리) ①농기계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확보 운영한다.

②농기계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령을 받아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③책임관리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농기계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관리한다.

④농기계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별도 규칙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책임관리자 1명과 담당자 1명 및 수리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책임관리자와 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훈련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업무를 겸한다.

제7조(사용기간및임대료기간) ①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대기간은 출고서에서 입고 완료시까지 일단위로 계산 하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한다.

③임차인은 임대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후 이상이 없을시 출고한다.

④임차인이 장비 사용후 입고약정 기한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등 임차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농기계를 임대를 받고자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사용농기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농기계은행의 대여농기계를 사용하고자하는 농가는 (별표1)에 의한 농기계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대여농기계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의하며 수입금 처리 절차등 대하여는 강화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대여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기간내에 장비를 입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따라 징수금액의 1.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재해복구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운영협의회) ①농기계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되 구성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회장,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영농장비담당, 대표농가를 포함 7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운영협의회에서는 사용료사용 기준 등 농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1회 이상 협의회를 갖는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기상이변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13조(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농기계 사용중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계획및결과보고)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사업계획 및 결과를 사업 개시전 및 완료후 1개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비치대장및장부)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한다.

1. 비품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은행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부과대장 및 징수부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 (2002. 4. 17. 조례 제483호)

개정 (2003. 12.15. 조례 제5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 은행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이하 "농기계 대여은행"이라 한다)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농기계대여은행"이라 함은 아산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이다.
- ②"대여농기계"라 함은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
- ③"사용료"라 함은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한 대여료를 아산시 금고에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②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③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농기계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등으로 확보 운영한다.

- ②농기계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아산시장의 명을 받아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③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기계대여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

한 장부를 비치 관리 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은 담당1명, 담당자 1명, 농기계교관 1명, 수리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겸한다.

제7조(사용허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농기계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준 및 기간) ①대여기준은 대여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농가가 보유 농기계 수 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1농가 1대 기준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하여 1대로 본다.

②대여 신청농가 입회 하에 기대의 이상유무 점검 및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출고한다.

③사용후 기대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④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대여를 불허한다.

⑤영농규모가 소규모인 농가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한다.

제9조(사용료) ①농기계대여은행의 대여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구입단가가 300만원미만은 5,000원
2. 구입단가가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은 10,000원
3. 구입단가가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은 15,000원
4. 구입단가가 1,000만원이상은 20,000원

②대여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대하여는 사용자(대여를 받은 자)본인이 책임진다.

제14조(비치대장)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①농기계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②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사용신청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 4>

관련사업 계획서 및 예산 수반사항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계획」

- WTO 출범 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쌀 수입개방과 한·미FTA, DDA 등 농산물 시장의 수입 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 단기간 사용하는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 해소 및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노임상승 문제를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함.

■ 양주시 농업현황

- ☾ 농가호수 : 4,409호(총가구 61,532호의 7.2%)
- ☾ 농가인구 : 16,252명(총인구 166,271명의 9.8%)
- ☾ 경지면적 : 4,923ha(호당 1.12ha)
 - 논 2,496ha, 밭 2,427ha
- ☾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 대, 2006년 12월기준)

농가	7,252	2,056	1,163	283	535	977	2,238
센터	35	1	2	1	4	1	26

■ 2006년도 농기계 수리 및 무상 대여실적

- ☾ 수리실적 : 505대(수리부품교체 1,961점, 수리부품대 5,614,870원)
 - 이동순회수리일수 39일
- ☾ 무상대여 실적 : 8종 33회 243일

대여횟수	4	6	3	1	13	2	3	1	33
대여일수	12	18	12	5	58	9	9	120	243

■ 사업개요

- ☾ 기 간 : 2007. 4 ~ 2011.12
- ☾ 사업내용 : 농기계 대여, 수리, 정비교육
- ☾ 총사업비 : 6,500백만원(국비 2,418 도비 1,125 시비 2,957)

계	6,500	626	1,060	1,060	1,610	2,144	
국 비	2,418	298	530	530	530	530	
도 비	1,125	125	250	250	250	250	
시 비	2,957	203	280	280	830	1,364	

☞ 건축 시설비 1,550백만원은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연계 추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총 계		6,500백만원	6,500
시 설 비	소 계	1,550백만원	1,550
	· 농기계 보관창고	· 500평 × 2,000,000원=1,000백만원	1,000
	· 농기계 수리센터	· 200평 × 2,000,000원=400백만원	400
	· 농기계 세차장	· 자동 세차시설 1식 × 100백만원	100
	· 호이스트	· 호이스트 5TON 1식 × 50백만원	50
자 산 취 득 비	소 계	4,950백만원	4,950
	· 농기계 구입	· 대여용 농기계 구입 1식 × 4,800백만원 - 트랙터, 콤팩트, 잔가지 파쇄기, 땅속작물 수확기 논두렁 조성기, 콩 탈곡기, 콩 정선기, 심토 파쇄기, 로터베이터, 다목적 파종기, 퇴비살포기, 관리기, 승용 경운기, 농용 굴삭기, 마늘 수확기, 파이프 밴딩 성형기, 톱밥 제조기, 스키더 로더, 파종기, 원판 쟁기, 중경 제조기, 석회 살포기, 휴립복토기, SS분무기, 두둑성형기, 승용관리기, 비료살포기, 쟁기, 배토기, 구굴기, 휴립피복기, 부추수확기 등	4,800
	· 차량 구입	· 차량 3대 × 50,000,000원=150백만원 - 농기계 수거 및 운반용, 크레인 장착비 포함	150

■ 사업추진 근거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
- ☞ 제6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 추진방향

- ☞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가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사업의 공공성 유지와 농기계 활용을 제고 및 많은 농가 혜택기회 제공
- ☞ 농업기술센터 자체보유 농업인 교육훈련용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대여사업 및 다양한 대여용 신기종 작업기를 구입하여 농가부담 경감
- ☞ FTA타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가의 경쟁력 제고
- ☞ 영세농가에 소득이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저렴한 대여료 책정

■ 세부사업 추진계획

- ☞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인력육성 담당외 9명
 - 농기계 담당자 2명,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장 7명
 - 조사 기간 : 2007. 2. 8 ~ 2007. 3.15(36일)
 - 조사 지역 : 양주시 전지역 표본조사
 - 조사대상 농가수 : 2,116호
 -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 초단기 임대(3일 이내)
 - 대여 농기계 구입 : 수도작, 전작, 원예, 축산, 특작
 - 기 타 : 임대 수요 농기계를 농가가 필요한 장소에 운반 요구
 - 조사결과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에 반영한 내용
 - 양주시 전지역 농가를 읍·면·동 산업담당과 협조 농업인 상담소장이 표본조사 결과 단기간 사용하는 작업기 위주의 농기계 대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중선정과 농가 호당 1.12ha에 불과한 영농 규모상 대여기간을 3일 이내 단기임대를 선호하여 임대방식을 초단기 임대(대여기간 3일)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추진
- ※ 자치법규 입법 예고일 2007년 4월 10일(공고번호 제477호)

☞ 2007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도비	시군비
1개소	626,000 (100%)	298,000 (48%)	125,000 (20%)	203,000 (32%)

☞ 2007년도 대여은행 농기계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총사업비	대여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비		기 타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수 량	소요금액	
626,000천원 (100%)	38종 75대	450,000천원 (72%)	661㎡	75,000천원 (12%)	8점	75,000천원 (12%)	26,000천원 (4%)

☞ 농기계 대여은행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농기계	임대 대상자	비 고
단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작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보행형,승용형), 논두렁조성기, 원판쟁기, 볏씨밭아기, 로우더, 퇴비살포기, 로터베이터, 무논정지기, 비료살포기, 중경제초기 · 전작 : 땅속작물 수확기, 콩 정선기, 콩 탈곡기, 휴림피복기, 심경로타리, 심토파쇄기, 다목적파종기, 인력식파종기, 농용굴삭기, 관리기, 콩 예취기, 플라우 쟁기, 경운기 · 원예 : 저상형 소형트랙터(30마력), 채소파종기, 잔가지파쇄기, 구굴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 축산 : 톱밥제조기, 스키더로더, · 특작 : 인삼수확기(땅속작물 수확기) 	전 농업인	초단기 임대 3일 이내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문제점 및 대책

구 분	문 제 점	대 책
보관 창고	· 광석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 보관창고 신축불가	· 기존 보관창고 활용 · 실증재배용 연동형하우스 992㎡ 개조 활용

☺ 대여 농기계 구입

• 2007년 대여사업용 농기계 신규 구입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종명	규격	모델명	수량	단가	사업비	비고
합계				75		450,200	
수도작	트랙터	55PS	T552STAR	1	33,605	33,605	
	이앙기	승용산파 6조	RG0-6	2	14,040	28,080	
	이앙기	보행산파 4조	PF455ST	1	2,530	2,530	
	콤바인	4조 산물	DKC685-CP	2	38,400	76,800	
	논두렁조성기	22~50PS	SH-40	5	2,640	13,200	
	원판쟁기	26~35PS	SW-DP1504	1	3,575	3,575	
	원판쟁기	35~55PS	SW-DP2006	3	4,312	12,936	
	원판쟁기	55~100PS	SW-DP2508	1	5,027	5,027	
	퇴비살포기	55PS	TKT-S4500	1	9,460	9,460	
	로타베이터	45~85PS	WJ220C	3	4,180	12,540	
	무논정지기	45PS	WJF350	2	5,145	10,290	
	로우더	0.38㎡	TS51	2	4,004	8,008	
	비료살포기	800kg	10D-2000	2	3,960	7,920	
	범씨밭아기	500kg	IRS-500	2	1,551	3,102	
	중경제초기	보행형	MA-3	3	1,210	3,630	
전작	땅속작물 수확기	감자, 고구마	DR-1400AT	2	5,258	10,516	
	휴입 피복기	40PS	RM-2000	2	3,630	7,260	
	관리기	6.5PS	AMC-900SM	3	4,350	13,050	
	심경로타리	41PS	WJD160	2	3,245	6,490	
	심토파쇄기	5조, 45PS	SWS-5	2	3,300	6,600	
	다목적파종기	12조, 35PS	HG1200A	2	4,532	9,064	
	콩 정선기	350kg/hr	SB-E10	2	9,515	19,030	
	콩 탈곡기	300kg/hr	IBTO-1000	3	1,650	4,950	
	콩 예취기	회전날식	BH-710	1	4,620	4,620	
	풀라우 쟁기	39~50PS	SW-HT1104	2	1,672	3,344	
	풀라우 쟁기	51~55PS	YS-6P-3	2	1,738	3,476	
	풀라우 쟁기	80PS	YS-3DUP	2	5,236	10,472	
	풀라우 쟁기	30~45PS	SW-HM1204	2	1,221	2,442	
	풀라우 쟁기	26~30PS	SW-HM913	1	1,067	1,067	
	풀라우 쟁기	43~48PS	YS-5P-500	2	1,738	3,476	
	풀라우 쟁기	80PS	YS-7P	1	2,627	2,627	
	복토 직파기	10조, 45PS	KDS-08L	6	9,600	57,600	
원예	트랙터	저상형 31PS	T302NCSS	1	13,100	13,100	
	잔가지 파쇄기	트랙터용	DLK70	1	9,020	9,020	
	구굴기	25~50PS	JY270-500	1	4,455	4,455	
	파이프 밴딩성형기	하우스 제작	BS-15	1	4,200	4,200	
축산	톱밥 제조기	트랙터용	DLK-1000	1	11,858	11,858	
특작	땅속작물 수확기	인삼	DR-1400ST	2	5,390	10,780	

☾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용 농기계 대여은행 활용 내역

• 대여 기종 : 22종 35 (기존보유 21종 34, 신규 1종 1대)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일 8시간 평균 작업능력	비고
1	트랙타	금성 39PS	대	1	2.33ha	'95.10.02
	트랙타	동양 76PS	"	1	3.33ha	'02.08.01
2	승용이앙기(6조)	대동 5PS	"	1	3.33ha	'04.04.21
3	콩바인	국제 산물 4조	"	1	3.33ha	'02.07.12
4	승용경운기	동양 10PS	"	1	1ha	'02.08.01
5	경운기	대동 8PS	"	1	0.66ha	'82.05.10
6	일륜관리기	아세아 4.5PS	"	1	0.66ha	'03.04.25
	관리기	아세아 5PS	"	2	0.66ha	'88.10.01
7	퇴비살포기	세원 2.3톤	"	1	2ha	'03.04.07
8	농용굴삭기	동양 19PS	"	1	0.83ha	'99.07.14
9	승용관리기	아세아 20PS	"	1	1ha	'97.08.22
10	스피드 스프레이어	아세아 52PS	"	1	1ha	'96.10.01
11	채소파종기	신화 8조식	"	1	1.33ha	'05.05.27
12	로더	트랙타부착용 (태성)	"	1	1ha	'96.10.05
13	그레이더	트랙타부착용 (태성)	"	1	1ha	'96.10.05
14	배토기	트랙타부착용 (태성)	"	1	1ha	'05.05.27
15	로터베이터	트랙타부착용 (동양)	"	1	2.33ha	'02.08.03
16	비닐피복기	트랙타부착용 (영신)	"	1	1ha	'05.05.27
17	휴립피복기	트랙타부착용 (대성)	"	1	1ha	'02.08.03
18	인력파종기	황금파종기(1조)	"	5	0.66ha	'06.04.03
19	콩탈곡기	전기모터(부흥)	"	2	35가마	'03.08.01
	콩탈곡기	트랙타부착용(영신)	"	1	60가마	'06.09.22
20	땅속작물 수확기	두루 DR-600	"	3	1ha	'06.12.21
	땅속작물 수확기	두루 DR-700	"	2	1ha	'06.12.21
21	스키드로더	농용로우더(DMC)	"	1	100톤	'06.06.08
22	파이프 밴딩성형기	이천 BS -15	"	1	1ha	'07.01.04
				35		
계		22종 35대				

■ 농기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과의 차이점

구 분	도비사업(임대사업)	국비사업(대여은행)
임대방식	· 장기임대	· 단기임대
수혜대상자	· 극소수 농업인(작목반, 전업농)	· 전 농업인
임대기종	· 대형 농기계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수도작)	· 소형 농기계 · 부속 작업기 중심(전작)
사용기간	· 농기계 내구연한(6~8년)	· 초단기(1회 3~5일)
자부담	· 농기계 구입비의 50%	무

■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방법

- ☞ 사전 전화예약으로 선착순 대여순서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1회 최대 3일간 기준을 적용하여 많은 농가 혜택기회 부여
- ☞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 부담
- ☞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 이외에 사용할 경우 추후 대여 불허
- ☞ 대여사업 시행 전 조례를 제정하여 저렴한 사용료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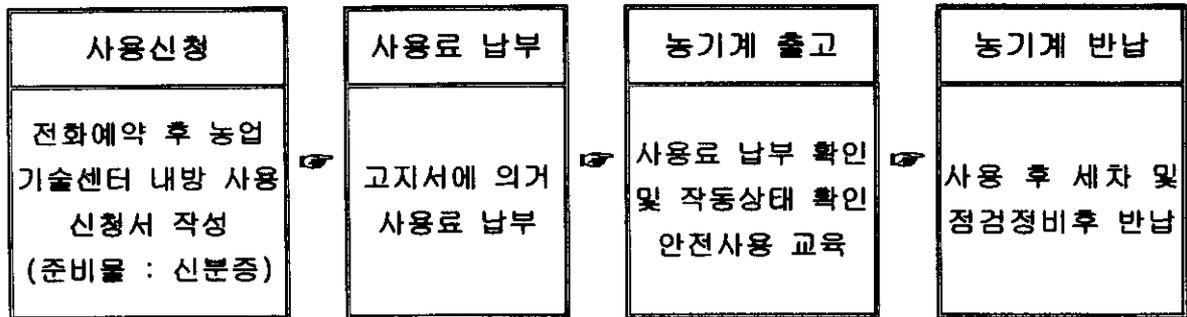
■ 농기계 대여료 산정기준

(1일당 대여료)

3,000만원 이상	100,000원	콤바인(4조식), 트랙터(대형), 농용 잔가지 파쇄기 등
2,000만원 이상	50,000원	트랙터(소형), SS분무기, 스키더 로더 등
1,000만원 이상	20,000원	농용 굴삭기, 승용 이앙기(6조), 톱밥제조기 등
500만원 이상	15,000원	심도 파쇄기, 콩 정선기, 땅속작물 수확기, 논두렁 조성기, 심경로터리, 퇴비살포기, 다목적 파종기 등
300만원 이상	10,000원	승용 경운기, 파이프 밴딩 성형기, 로타베이스 등
300만원 이하	5,000원	콩 탈곡기, 인력식 파종기, 경운기, 관리기, 원판쟁기, 폐비닐수거기, 휴립피복기, 일훈관리기, 경운기용 땅속작물 수확기, 배토기, 그레이더, 채소파종기 등

☞ 1일당 대여료는 농기계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 농기계 대여 절차



■ 대여 농기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 대여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자 및 전임 계약직 마급 농기계 수리·교육 직원을 통한 현장 기술교육
- ☾ 대여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 농기계 담당자 1명, 전임계약직 마급 1명
- ☾ 대여농기계 공제(보험) 가입계획
 -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용 농기계 종합보험을 2006년 9월 20일부터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에 가입중
- ※ 배상한도 : 대인(무한), 대물(5,000만원), 자손(1억원), 적재농산물(200만원)
- ☾ 대여농기계 관리방법
 - 2007년 본예산에 17,000천원을 대여장비 유지관리비로 기편성
 - 2007년 1월 2일자로 농기계 수리·관리 전담인력 전문계약직 직원을 활용 자체 수리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농기계은행 설치 후 수리인력 추가확보
 -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부품창고 및 수리센터 운영(148㎡)
 - 사업의 공익성 유지와 영세농가에 소득이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대여 기간 준수와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 이외의 대여 불허
 - 농기계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사용자 부담

■ 타사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성과

☞ 아산시 : 2005년도 행정혁신과제 경진대회 입상

- ❖ 아산시 : 1위
- ❖ 충청남도 : 장려상
- ❖ 전국대회 행정자치부(공공자치연구원) : 혁신상

☞ 황민영 대통령 농어촌 자문위원장(2005.12.26) 벤치마킹

■ 2007년도 사업 추진일정

- ☞ 2007. 2 : 농기계 대여사업용 농기계 농가 수요파악
- ☞ 2007. 4 :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계획서 농림부 사업승인
- ☞ 2007. 4 :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 농림부 : 500,000천원(국비 250,000 도비125,000 시비125,000)
 - 농기계 구입(36종 67대), 보관창고 설치(661㎡), 관리장비 구입등
 - 농촌진흥청 : 95,800천원(국비 47,900 시비 47,900)
 - 농기계 구입(3종 8대) : 콤바인, 복토직파기, 파이프 밴딩 성형기
- ☞ 2007. 4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2007. 7 :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 2007. 7 : 농기계 보관창고 설계
- ☞ 2007. 8 : 농기계 대여사업 시행 안 시정 홍보
- ☞ 2007. 9 : 농기계 보관창고 준공
- ☞ 2007. 9 : 대여농기계 구입
- ☞ 2007.10 : 대여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 농기계 대여은행 홈페이지 구축, 대여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지게차, 고압세척기, 관리차량, 크레인등
- ☞ 2007.10 : 농기계 대여은행 현판식 및 개소식

■ 향후 추진계획

- ☞ 도시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시 본격적인 농기계 대여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 신축과 농기계 수리시설확충 및 수리 전문인력확보
- ☞ 관내 농기계 수리전문점이 없는 오지마을을 제외한 이동수리 폐지
- ☞ 농기계의 보관, 임대, 수리 및 폐농기계 수거까지 일괄 처리하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 부여
- ☞ 이동이 불편한 농기계를 운반하여 수리 후 농가에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

■ 문제점 및 대책

- ☞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의 공익성 유지 및 대여용 장비 유지 관리
⇒ 초단기 임대(1회 3일로 제한), 농기계 자체 수리 능력 확보를 위한 계약직 수리요원 추가 확보
- ☞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농기계 상시 수리 시스템 구축
⇒ 농기계 수리 운반용 운송차량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수리 효율성 제고

■ 기대효과

- ☞ 고가장비 농가대여로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 ☞ 신기종 농업기계 농가활용으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부담 경감
- ☞ 농가 호당 1.12ha에 불과한 영세 농가에 단기간 사용하는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 해소
-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가 영농 경쟁력 강화

<별첨 5>

의원간담회 제시의견 반영결과

- 농기계 대여사업의 사업주관 부서 통일
 - 총액인건비 제도와 우리시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서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총무과에서 추진중

- 농기계에 대한 농민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농기계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농기계 비숙련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계화 영농 농사반』 위탁 교육하여 각종 영농기계 취급 조작교육 및 전문계약직 직원 주관아래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시후 농기계 출고
 - ⇒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관리기 등 각종 영농기계 교육

- 제7조 제4항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징수와 관련하여 “1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징수한다.”로 조정 검토
 -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

- 제14조 제3항 농기계 사용자의 책임대상 범위에 대한 문구 검토
 - “제14조(사용자의 책임과 변상) 제3항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다만, 천재지변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수정

<별첨 6>

기 타 참 고 사 항

1. 200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농림부 시달)
2.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3.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폐지대상)

1. 200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농림부 시달)

12	농기계임대사업(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박종서, 서기관 박상민)입니다.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를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구입, 임대료징수 및 내용연수 경과 후 대체농기계 구입 등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확보하는 등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3.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 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등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다. 사업시행

- 임대사업 사업계획서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유형, 구입대상 임대 농기계 등을 조사한 후 사업대상 지역의 영농현황,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 사업계획서 수립시 농업공학연구소가 통보한(기초기술공학과 - 259호, '06.10.24)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 농작업의 기계화는 노동강도의 경감이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농업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농기구비의 비율은 1980년 7.1%에서 2002년에는 18.4%로 크게 증가하였다.

○ 따라서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농산물 생산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비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기계 이용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정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①농업기계 공동이용 촉진 ②중고농업기계 거래활성화 및 이용 확대 ③경영규모에 적합한 농업기계의 공급 등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부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446개소에 약 1,3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다.

○ 2005년까지 지원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농협에서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 도입 단계에서 부적합한 기종의 선정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을 농업인에 대한 관심성 또는 환원사업 측면에서 접근하여 투자비의 회수율 저하 등으로 임대 기종의 대체 구입이 어려워 임대사업의 지속성에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대유형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임대사업의 유형별 장단점, 그리고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정리하였다.

○ 그리고 제4장에서는 2003년부터 정부지원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

는 19개소와 1990년대 후반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은행 4개소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주체별 임대유형, 임대 농업기계 및 임차인의 선정 및 관리방법, 임대 농업기계의 이용실적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임대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 제5장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임대사업의 기본적인 운영방안, 임대유형 및 운영기관의 선정방법, 임대 농업기계 및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임작업료 산정방법, 임대사업 유형별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 그리고 제4장의 임대사업 운영실태 및 제5장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록에서는 임대 농업기계의 임대료 및 임작업료 산정 등에 기초가 되는 농업기계 이용비용 및 임대료 산정방법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기관에서 반드시 제정·운영해야 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예시"로 첨부하였다.

제 3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개요

○ 농업기계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들은 농업기계의 성능상 부담면적에 비하여 개별 농가의 소유 경지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가별 농업기계 소유·이용보다는 여러 농가가 농업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조직을 구성과 지원에 그 초점이 두어져 왔다.

○ 농가에서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농업기계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②남에게 임작업료를 주고 부탁하던지 ③농업기계를 빌려서 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개별농가나 생산자 조직마다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작업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 ① 소규모 농가에서는 농업기계를 개별로 소유하기가 어려우며 비경제적이다.
- ② 연간 사용시간이 짧아서 고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 ③ 복합영농에서는 농작업이 다양하여 농업기계 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 ④ 농업기계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이용할 경우, 영세한 농가의 참여로 경영감각이 있고 자주성을 갖춘 경영체로 발전하기 쉽지 않다.

- ⑤ 새로 영농을 시작하려는 경우, 농업기계 구입비가 많이 들고 경영 리스크가 증가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개념

○ 임대사업은 관련된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목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은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정의되는 임대차를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리스(lease)와 렌탈(rental system)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유 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념상으로 볼 때, 임대차 내에 리스와 렌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은 임대차의 물건이 농업기계로 한정된다는 의미로서 농업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일정 기간동안 빌려주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임대기간 1년 이상인 장기임대(리스라고 칭함)와 1년 미만(월, 일, 시간 단위)인 단기임대(렌탈이라고 칭함)로 구분한다. 따라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농업기계만을 빌려 주는 것으로 농업기계를 갖고 농작업을 직접 대신해 주는 농작업대행과는 차이가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장단점

나. 단기임대 장단점

○ 단기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①초기 농업기계 구입비가 들지 않는다, ②경영규모에 맞는 농업기계를 수시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농업기계 보관창고가 필요 없어 관련 시설투자비가 들지 않는다, ④농업기계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는다, ⑤기술진행 속도가 빠른 농업기계의 구식화를 피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 한편, 임대사업자(기관) 측면에서는 ①많은 농가에게 임대 농업기계 이용혜택을 줄 수 있다, ②농업기계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③개별농가에서 연간 이용시간이 짧은 기종을 임대하므로써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킬수 있다, ④농업기계의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반면, 단점으로는 ①초기 농업기계 구입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②농작업 적기가 집중되어, 농업기계의 가동 기간이 한정되므로 임대 농업기계를 위한 보관창고가 필요하다, ③다음 임대자를 위해 항상 임대농업기계를 수리정비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수리·정비 시설 및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수리업소와의 계약에 의해 수리정비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반 수리업소에서는 개별 농가의 농업기계 수리와 맞물려 수리지연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임대기관 자체로 수리정비시설 및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④임대 농업기계를 여러사람이 사용하다보니 고장발생에 의한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⑤농가별 농업기계 이용성향 및 농업기계별 임대수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 우리나라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고 영세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1990년대 말부터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는 1992년부터 독일의 농기계은행을 모델로 발전시킨 농기계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 2006)”에서 농업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선정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률 제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농업기계 임대방법

○ 한편, 임대료는 농업기계 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해당지역 임작업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임대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조합장, 농민대표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 특히,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 농업기계의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매각 또는 폐기 처분되었을 때에는 임대료 적립금으로 재구입이 가능하도록 임대료를 산정하며,

임대료의 납입방법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 4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실태

○ 우리나라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2003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앞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비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대사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 조사표본은 2003~2005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총 23개소 가운데 19개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비 등으로 육성한 4개소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정부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19개소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한 임대사업 4개소는 연구자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하였다.

1. 운영주체별 임대사업 유형

○ 조사된 임대사업 23개소의 사업자별 임대유형은 (표 9)와 같이 임대사업의 운영주체는 농업기술센터 13개소, 지역농협 10개소 등이었고, 임대유형은 단기임대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장기임대 6개소, 농작업대행 4개소, 단기+농작업대행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별 유형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단기임대 11개소와 단기임대+농작업대행 2개소 등으로 단기임대가 많았으며, 농협은 장기임대 6개소와 농작업대행 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표 9.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별 유형

기관명	임대유형(개소)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단기+농작업	계
농업기술센터	-	11(11)	-	2	13(11)
지역 농협	6(6)	-	4(2)	-	10(8)
계	6(6)	11(11)	4(2)	2	23(19)

<주> ()는 2003~2005년 동안 농림부 임대사업 지원자금에 의해 추진

○ 임대사업의 확대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계 단기임대 또는

농작업대행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나타났으며, 현행유지 또는 축소계획은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장기임대 또는 농작업대행에서 나타났다.

표 11.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계획

구 분		임대사업 유형별 운영계획(개소)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단기+농작업	계
계		6	11	4	2	23 (100)
금후 계획	현행 유지	4	7	1	-	12 (52.2)
	사업 확대	1	4	2	2	9 (39.1)
	사업 축소	1	-	1	-	2 (8.7)

○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의 확대계획은 지역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임대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농협 2개소는 임대 농업기계의 구입자금 회수율이 저조하여 내구년수가 지난 다음 대체 농업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비 부담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대료를 통한 임대기종에 대한 수요 확보로 임대 농업기계 구입비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임대사업을 농업인에 대한 환원성 또는 선심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운영한다면 1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나. 단기임대

○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실적 및 임대료로 산정한 해당 농업기계의 구입 가격에 대한 연간 총 임대료의 회수율은 트랙터 부착용 로티베이터, 관리기 부착용 구굴기 및 비닐피복기 등 3기종은 100%이상이지만 나머지 기종은 대부분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사업을 1회성이 아닌 자생력이 있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기종의 선정과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임대기종을 선정할 때는 미리 해당지역의 영농실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내구년수가 도래되면 대체 기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의 구입 가격에 대한 고정비의 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26.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임대실적 및 임대료

구분	기종명	임대 실적 (일/년)	임대료 (천원/일)	구입가격 대비(%)		구입가격 (천원/대)	내구 년수 (년)
				손익분기 ¹⁾	임대수입 ²⁾		
공통	트랙터(65ps)	27	80	150	56.7	30,486	8
	-플라우(원판)	20	9	180	25.8	5,579	8
	-로타베이터	17	50	180	283.3	2,400	8
	-심토파쇄기	1	10	160	0.8	7,590	6
	-비료살포기	4	5	160	21.4	560	6
벼농사용 기계	보행형이앙기	6	30	150	41.6	2,161	5
	승용형이앙기	10	32	125	9.8	16,400	5
	콤바인(4조산물)	14	150	125	32.5	32,266	5
	벼직파기(건답)	2	20	160	10.0	2,400	6
	탈망기	2	10	160	18.8	639	6
	벌씨밭아기	4	5	150	9.1	1,100	5
	상토조제기	1	10	160	5.5	1,097	6
	논두렁조성기	5	20	160	12.5	4,800	6
밭작물용 기계	관리기	15	15	125	63.1	1,784	5
	농용굴삭기	9	50	200	29.2	15,430	10
	석회살포기(경)	2	10	200	20.2	992	10
	퇴비살포기(트)	31	7	160	34.7	3,754	6
	구굴기(관)	4	5	160	162.2	74	6
	휴림피복기(관)	3	5	160	55.6	162	6
	비닐피복기(관)	11	5	160	127.9	258	6
	비닐수거기(트)	3	10	150	5.1	2,920	5
	마늘쪽선별기	3	20	200	19.5	3,083	10
	마늘줄기절단기	7	10	200	70.0	1,000	10
	마늘선별기	5	10	200	29.9	1,672	10
	땅속작물수확기	10	20	200	49.1	4,075	10
	콩탈곡기	47	3	160	54.1	1,564	6
	다목적파종기	8	30	200	77.4	3,100	10
파이프밴딩성형기	10	20	200	36.4	5,500	10	
축산용기 계	결속기(원형)	24	20	160	17.8	16,200	6
	결속기(사각)	5	20	200	2.5	39,600	10
	랩피복기	5	10	200	2.5	19,800	10
	반전집초기	8	10	160	9.9	4,851	6
과수용기 계	스피드스프레이어	1	30	135	0.9	20,400	6
	잔가지파쇄기	7	10	160	13.2	3,180	6

<주> 1) 손익분기 = {(감가상각비+이자+수리비)×내구년수}/구입가×100

2) 임대수입 = (1일 임대료×임대실적×내구년수)/구입가×100

5. 농업기계의 임대료 산정

나. 단기임대 임대료

○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운영기관의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임대할 농업기계의 대체 구입과 유지관리 및 입출고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단기임대 농업기계는 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1~3일 정도이므로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다음의 (식 3)과 같이 농업기계의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및 수리비 등의 고정비를 연간 예상되는 임대일수로 나누어 주면 된다. 또한, 단기임대 운영기관에서 임대 농업기계의 보험료, 차고비, 입출고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예상 임대일수로 나누어 주면 된다.

$$\text{1일 임대료} = \frac{\text{감가상각비} + \text{자본이자} + \text{수리비}}{\text{예상 임대일수}} \quad (3)$$

○ (그림 5)는 트랙터(55마력)+원판 플라우(이랑 6런), 승용이앙기(6조) 및 산물형 콤바인(4조) 등을 단기임대할 경우 (식 3)에 의하여 산정한 기종별 연간 예상되는 임대일수에 따른 1일 임대료이다. 연간 예상되는 임대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일 임대료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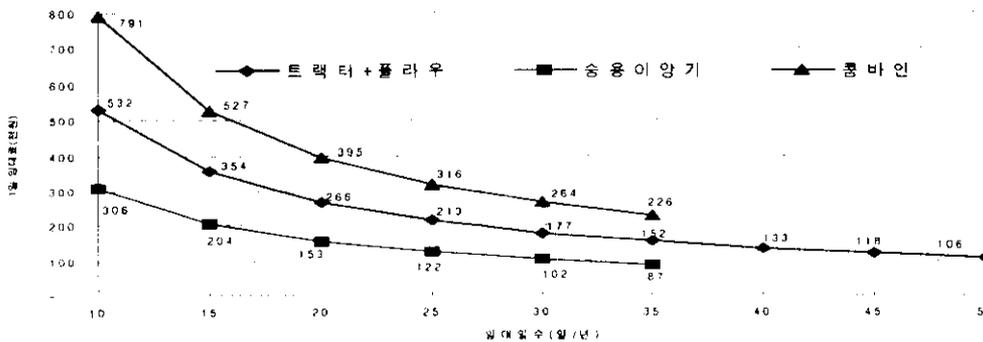


그림 5. 주요 기종의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

○ 한편, 기종별 연간 임대일수에 따른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1일 임작업료를 (식 3)을 이용하여 산정하면 (표 29)와 같다. 기종별 1일 임대료는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일수가 20일인 경우,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이하면 1만원이하, 100만원~200만원이면 1만원~2만원, 200만원~500만원이면 2만원~5만원 정도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농업기계 가격 10만원당 1일 임대료는 1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29. 단기임대 농업기계의 연간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

기종명	규격	구입가격 (천원)	임대일수별 1일 임대료(천원/일)					
			10	20	30	40	50	60
동력경운기	10ps	2,380	47	24	16	12	9	8
-트레일러	1ton	848	19	9	6	5	4	3
-동력분무기	75A	165	4	2	1	1	1	1
-땅속작물수확기	70cm	780	17	9	6	4	3	3
-마늘파종기	7조	3,350	75	37	25	19	15	12
-석회살포기		550	12	6	4	3	2	2
트랙터	55ps	25,850	498	249	166	124	100	83
-플라우	이랑6련	1,520	34	17	11	9	7	6
-로타베이터	190cm	2,400	54	27	18	13	11	9
-논두렁조성기	40cm	4,850	109	54	36	27	22	18
-심토파쇄기	3조	1,800	40	20	13	10	8	7
-비료살포기	600kg	1,350	30	15	10	8	6	5
-퇴비살포기	3.0ton	6,480	145	72	48	36	29	24
-배토기	250cm	850	19	10	6	5	4	3
-건담직파기	점과8조	4,500	101	50	34	25	20	17
-휴립복토기	2두둑	3,700	83	41	28	21	17	14
-땅속작물수확기	130cm	3,700	83	41	28	21	17	14
-원형결속기	181cm(85ps이상)	26,500	593	296	198	148	119	99
-사각결속기	119cm(35ps이상)	13,600	304	152	101	76	61	51
-랩피복기	120*125cm	14,000	313	157	104	78	63	52
-반전집초기	320cm(2축)	3,750	84	42	28	21	17	14
-액상비료살포기	3000 ℓ	6,070	136	68	45	34	27	23
-마늘파종기	10조	7,900	17	88	59	44	35	29
-마늘수확기	180cm	3,900	87	44	29	22	17	15
-봄스프레이어	600 ℓ	2,950	66	33	22	17	13	11

<주> 감가상각비의 산정기준

- 구입가격 : 농업기계가격(2006)
- 내구년수 :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8년,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8년,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이앙기 및 콤바인 5년, 기타 8년
- 폐기가격 :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25%, 트랙터 30%, 작업기 등 5%
- 금리 : 4.5%, 수리비계수 6%

3.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대상)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1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효과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기계 이용을 제고를 위하여 양주시농업개발센터에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정비·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농업기계수리는 읍·면·동의 리·통 등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④농업기계수리는 수리소 마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4조(관리) ①농업기계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농업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담당지도사, 농업기계교관, 기능직요원 및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속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③징수한 부속품대는 농업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농업기계 수리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